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關係法規

表示·廣告에 關한 公正去來指針

I. 目的

本指針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이하 “公正去來法”이라 함) 第15條에 의한 經濟企劃院 告示 第40號「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第7號(不當表示) 및 第12號(虛偽誇張 廣告 및 欺瞞行爲)의 運營과 關聯하여 事業者 및 一般國民에게 同法 및 告示에 대한 政府의 運營方針과 同規定內容에 違背되는 不當한 表示 廣告가 具體的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줌으로써 公正去來慣行의 自發的인 造成과 參與를 通해 不公正去來行爲를 事前에 防止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本指針에 反하는 表示나 廣告를 하는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公正去來法上의 不公正去來行爲가 된다.

그러나 本指針에 列舉된 事項은 一般商去來上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代表的이고 共通的인 事項을 抽出한 것이므로 本指針에 列舉된 事項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各種 生産者團體나 販賣業者團體 또는 其他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와 關聯된 各種 事業者(規模나 形式을 不問함)는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를 거쳐 本指針의 基本 精神에 立脚하여 各己 同業者間的 公正한 競爭

秩序維持와 消費者 保護를 위한 自律的인 自體 規約을 制定 運用할 수 있다.

II. 用語의 定義

1. 本指針에서 “表示”라 함은 事業者가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 또는 用役의 品質, 規格, 其他의 內容이나 價格, 其他의 去來條件 등에 關한 事項에 대하여 消費者가 알 수 있도록 當該 商品이나 이의 容器, 包裝(添附物 또는 內容物 包含) 또는 事業場 등에 設置한 標識板에 附着하여 記載한 文字나 圖形 및 包裝 그 自體를 말한다.

2. 本指針에서 “廣告”라 함은 事業者가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 또는 用役의 品質, 規格 기타의 內容이나 價格, 其他의 去來條件 등에 關한 事項에 대해서 아래의 媒體를 利用하여 一般消費者에게 宣傳 또는 提示하는 行爲를 말한다.

- 가. 新聞, 雜誌, TV, 라디오, 放送, 映寫
- 나. 포스터, 看板, 네온사인, 에드벌론
- 다. 見本, 傳單, 팜프렛, 廣告성냥, 立場卷
- 라. 訪問廣告, 實演에 의한 廣告
- 마. 기타 上記 各項과 類似한 方法에 의한 廣告物

III. 規制對象 및 法運用方針

- 1. 規制對象이 되는 表示·廣告
公正去來法에 依한 規制對象이 되는 不當한

表示·廣告는 다음과 같다.

가.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 또는 用役(以下 “商品”이라 한다)의 品質, 規格, 性能, 容量, 原產地, 包裝, 기타의 去來內容에 關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表示·廣告(以下 “表示”라 한다)를 하는 行爲

(1) 事實과 다르게 表示하는 行爲

(2) 消費者를 속이든가 또는 속계꿈 誤導시키는 表示行爲

(3) 部分的으로는 事實이라고 하더라도 全體的으로 보아 消費者의 判斷을 誤導케하는 不正確한 表示行爲 또는 誇張表示行爲

나.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의 價格, 供給數量, 引渡條件, 代金支拂 方法, 保證 및 其他의 去來條件에 關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表示를 하는 行爲

(1)~(3)號(上記 各의 (1), (2), (3)號와 同一)

다.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이 현저히 優良 또는 有利하다고 誤導케하기 爲하여 競爭事業者가 供給하는 商品에 關하여 事實과 다르게 또는 誇張하든가 中傷·誹謗하는 內容의 表示를 하는 行爲

2. 法運用方針

不當한 表示에 對한 公正去來法 運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當該 不當表示에 對한 事業者의 故意 또는 過失與否를 不問한다.

나. 問題되는 表示 또는 廣告內容에 對한 事實與否 또는 眞偽與否에 關한 立證責任은 當該 事業者가 진다.

IV. 表示·廣告에 關한 一般指針

1. 表示·廣告의 基本原則

消費者는 自己가 購買하고자 하는 商品에 關해 알 權利가 있고, 供給者는 自己가 販賣하고자 하는 上品에 關해 消費者에게 알릴 權利가 있는 同時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義務가 있으며, 政府는 供給者로 하여금 眞實되게 알리도록 하고 消費者가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指導

해야 할 責任과 義務가 있다.

眞實되고 充實한 商品情報가 消費者에게 傳達이 될 때 消費者는 올바른 商品選擇과 合理的인 購買決定을 할 수 있게 되며 供給者는 競爭相對方과의 公正한 競爭을 期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모든 商品 또는 用役의 供給者는 이러한 自己의 權利와 義務를 格別히 留意하여 自己가 供給하고자 하는 商品 또는 用役에 關한 表示·廣告를 함에 있어서 消費者가 合理的인 商品選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競爭事業者와는 公正한 競爭秩序를 維持·圖謀할 수 있도록 事實에 基礎하여 內容은 充實하게, 方法은 客觀的으로 公正하고 適正하게 表示하여야 한다.

2. 價格에 關한 表示·廣告

가. “價格”이라는 用語의 使用

(1) 價格表示를 함에 있어서는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의 價格을 事實대로 表示하여야 한다.

따라서 消費者價格을 表示함에 있어서는 當該 商品을 消費者에게 直接 供給하는 小賣業者(直賣場 包含)가 아래와 같이 表示하는 것이 原則이다.

• 價格○○원, 定價○○원, 販賣價○○원, 값○○원, 消費者價格○○원, ○○원, 料金○○원, ××料○○원 등

(2) 그러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勸獎 또는 단지 參考케할 目的(Suggested Price)으로 消費者價格을 表示할 수는 있다. 但, 이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表示하여야 한다.

• 希望小賣(消費者) 價格○○원, 勸獎小賣(消費者) 價格○○원, 推薦小賣(消費者) 價格○○원

(3)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의 價格을 表示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表示하여야 한다.

• 出庫價○○원, 工場渡價○○원, 生産者價格○○원,
• 輸入者價格○○원, 輸入價○○원, 輸入者供給價○○원,

(4)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希望小賣價格을 表示함에 있어,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과

同一의 商品에 대하여 一定한 去來地域의 小賣業者 相當數가 同地域內에서 繼續的으로 販賣하고 있는 價格水準을 현저히 超過(20%線以上)해서 自己의 希望小賣價格을 表示하는 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例示〉

—A 商品에 대하여 一定한 去來地域의 小賣業者 相當數가 同地域內에서 繼續的으로 販賣하고 있는 販賣價格이 1,000원임에도 不拘하고 A商品과 同一商品을 製造販賣하는 어떤 事業者가 繼續的으로 1,200원 또는 그 以上으로 希望小賣價格을 表示하는 경우
나. 比較價格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을 割引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割引額을 算出하는데 따른 比較基準價格(從前價格, 時價, 希望小賣價格, 他社價格)은 事實대로 表示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 各項에서와 같이 事實과 다르게 比較表示하는 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1) 從前價格과의 比較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을 割引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 虛偽의 從前價格을 比較對照價格으로 하여 自己의 販賣價格을 比較表示하는 行爲

〈例示〉

—A商品에 대한 自己의 從前價格이 1,000원, 自己가 販賣하고자 하는 價格이 750원, 同製品과 類似規格製品의 從前價가 1,5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自己의 A商品 販賣價를 表示하는 경우

○ “A” 드디어 750원 引下

○ 750원

(2) 時價(實勢價格)와의 比較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을 割引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 虛偽의 時價를 比較對照價格으로 하여 自己의 販賣價格을 比較表示하는 行爲

〈例示〉

—A商品에 대하여 自己가 販賣하고자 하는 價格 700원, A商品과 同一條件에 있는 商品의 時價가 800원, 同一地域內의 一部 事業者가 販賣하고 있는 價格이 1,0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自己의 販賣價를 表示하는 경우.

○ 時價 1,000원→當店販賣價 700원

○ 時價 700원

(3) 希望小賣價格과의 比較

自記가 供給하는 商品을 割引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 虛偽의 希望小賣價格을 比較對照價格으로 하여 自己의 販賣價格을 比較表示하는 行爲

〈例示〉

—A商品의 希望小賣價格, 1,000원, 同商品에 對하여 自己가 販賣하고자 하는 價格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自己의 販賣價를 表示하는 경우

○ 價格引下 300원!

○ 當店販賣價 900원

(4) 他社價格과의 比較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의 實際 販賣하는 價格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虛偽의 競爭事業者價格을 比較對照價格으로 하여 自己의 販賣價格을 比較表示하는 行爲

※ 이 경우 他社의 名稱을 具體的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一般的으로 어느 會社를 指稱하는 가가 明白한 경우에는 該當이 된다.

〈例示〉

—自己가 販賣하고 있는 A商品과 同一條件에 있는 商品에 대하여 他事業者가 實際販賣하는 價格 1,000원, A商品과 類似한 規格의 商品에 대하여 他事業者가 實際販賣하는 價格 1,200원, 自己가 販賣하고자 하는 A商品의 價格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自己의 販賣價를 表示하는 경우

○ 他社價格 1,200원→當社價格 900원

[參 考]

(從前價格) : 當該 事業者가 當該 商品과 同一한 商品을 最近 相當期間(過去 30日 程度)에 걸쳐서 販賣하고 있던 事實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當該商品 또는 用役에 붙인 價格

(時 價) : 當該 商品과 同一의 商品에 대하여 當該 事業者가 속하는 去來地域의 事業者 相當數가 同地域內에서 販賣하고 있는 價格

(希望小賣價格) : 當該 商品에 對하여 製造業者 등이 最近에 붙인 價格으로서 미리 公表되고, 또한 實際의 去來에 使用된다고 期待되는 價格

다. 中古品, 瑕疵品 또는 舊型의 製品에 對한 價格

自己가 供給하는 中古品, 瑕疵品 또는 舊型의 製品을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當該 商品이 中古品等인 것을 表示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表示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比較表示하는 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但, 肉眼으로 보아 容易하게 識別할 수 있는 경우는 除外

○ 中古品等이 아닌 當該 商品과 同一한 新品의 價格을 比較對照價格으로 하여 自己의 販賣價格을 表示함으로써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中古品等)이 현저히 低價商品인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

라. 割引率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을 割引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割引率을 算出하는데 따른 比較基準價格(從前價格, 時價, 希望小賣價格, 他社價格)은 事實대로 表示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와 같이 事實과 다르게 比較表示하는 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 當該 割引率을 算出하는 根據로서 同一條件의 商品이 아니거나 또는 虛偽의 價格(從前價格, 時價, 希望小賣價格, 他社價格)을 比較對照基準으로 하여 自己의 割引率을 算出하여 表示하는 行爲

○ 中古品, 瑕疵品 또는 舊型品을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 當該 割引率을 算出하는 根據로서 中古品等이 아닌 當該 商品과 同一한 新品의 價格(時價, 希望小賣價格, 從前價格)을 比較基準으로 하여 自己의 割引率을 算出하여 表示함으로써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中古品等)이 현저히 低價商品인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

마. 割賦販賣價格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을 割賦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事實대로 表示하여야 한다.

따라서 事實과 다르게 또는 아래에서와 같이

事實보다 현저히 有利한 것처럼 模糊하게 表示하는 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1) 實際의 割賦販賣價格을 明示하지 않으므로써 現金販賣價格이 割賦販賣價格인 것처럼 消費者를 誤導케 하는 表示行爲

(2) 割賦金利를 表示하지 않고 割賦額만 表示함으로써 割賦販賣價格과 現金販賣價格이 同一한 것같이 誤認시키거나 또는 兩價格 比較를 어렵게 하는 表示行爲

<例示>

—어떤 事業者가 “特價 80,000원, 契約金 20,000원, 每月 2,400원 12회, 보너스 20,000원 2회” 라고 表示하여 마치 現金販賣價 80,000원이 割賦販賣價格인 것처럼 表示하는 경우

—어떤 事業者가 “每月 3,500원, 月賦價格 84,000원”이라고 表示해 놓고, 事實은 月賦價格 84,000원의 支拂方法이 月 3,500원씩 24個月均等拂로 하는 것이 아니고 契約金 21,000원, 每月 3,500원씩 18회 均等拂로 販賣하는 경우

[參 考]

(割賦販賣價格) : 分割拂價格, 月賦價格, 豫約積立價格 등 名稱如何를 不問하고 割賦販賣業者가 購入者로부터 代金을 2月以上の 期間에 걸쳐 또한 3회以上 分割해서 受領하는 것을 條件으로 해서 商品을 販賣하는 경우에 있어서 購入者가 當該 商品을 購入하기 위하여 割賦販賣業者에게 支拂하는 價格의 總額을 말함.

3. 材料, 成分에 관한 表示 · 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의 生産에 使用된 材料나 成分에 관하여 表示하는 경우에는 事實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事實과 다르게 또는 誇張하여 表示를 하는 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가. 實際 使用되지 않는 材料나 成分이 包含된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

나. 實際 使用된 量보다 많이 包含된 것처럼 誇張하여 表示하는 行爲

다. 實際는 輸入材料를 使用하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輸入材料를 使用한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

라. 使用된 材料나 成分이 輸入된 것을 完製品이 輸入된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

마. 副된 材料나 成分을 가지고 全體의 主된 成分인 것같이 表示하는 行爲

〈例 示〉

-“100%絹(Silk)” 또는 “絹(Silk)”이라고 表示해 놓았으나 實際는 50%가 絹(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 경우

※ 이 경우는 50%絹(Silk) / 50%레이온(Rayon)으로 表示하여야 할 것임.

-여러개의 要素 또는 材質이 合成되어 製造된 商品에 있어서 그 中 主된 要素 또는 主된 材質이 아닌 副된 要素 또는 副된 材質을 가지고 商品名으로 함으로써 當該 商品이 마치 商品名으로 表面에 내세우는 副된 要素 또는 副된 材質만으로 製造된 것인 양 誤導하는 경우

○ “산딸기아이스크림”이라고 表示해 놓았으나 實際는 산딸기 成分이 微量 投入되었거나 또는 산딸기 成分이 들어 있지 않고 단지 산딸기成分의 香(Flavour)만 들어 있는 경우

-“참기름”이라고 表示해 놓고 實際는 콩기름이나 들기름 등 其他 食用油을 섞어서 販賣하는 경우

4. 品質, 性能, 效能等에 관한 表示·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의 品質, 性能, 效能等에 關於하여 表示하는 경우에는 事實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事實과 다르게 또는 誇張하여 表示하거나 模糊하게 하여 消費者를 誤導케 할 憂慮가 있는 表示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가. 品質 또는 性能이 一定한 水準에 該當하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當該水準에 該當한다고 하거나 또는 當該水準에 該當하는 것같이 表示하는 行爲

나. 性能이 發揮될 수 있는 判斷 基準을 明示하지 않고 막연히 一定性能을 發揮한다고 表示하는 行爲

다. 一部 또는 部分에 關聯되는 品質 또는 性

能을 全體에 關聯되는 品質 또는 性能인 것처럼 誇張하여 表示하는 行爲

〈例 示〉

-“揮發油 11로 〇〇km 走行”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混雜한 市內에서의 基準인지 또는 高速道路에서의 基準等인지를 分明히 밝히지 않는 경우

※ 이 경우에는 市內에서 〇〇km, 高速道路上에서 〇〇km, 平均走行距離 〇〇km로 表示하는 것이 原則임.

-옥탄價(Octane Value)를 分明히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高級揮發油” 또는 “普通揮發油”라고 表示하는 경우

-防水가 될 수 있는 狀態나 條件等에 關於하여 表示함이 없이 “100% 防水” 또는 “Water proof”라고만 表示해 놓았는데 實際는 防水가 안되는 경우

5. 規格, 容量, 數量等에 관한 表示·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이 一定한 基準規格 또는 基準容量에 該當하는 경우에 이를 表示함에 있어서는 事實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事實과 다르게 또는 誇張하여 表示하거나 模糊하게 하여 消費者를 誤導케 할 憂慮가 있는 表示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가. 規格이 一定한 基準에 該當하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當該 規格에 該當한다고 하거나 또는 該當하는 것같이 表示하는 行爲

나. 容量을 實際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外形의 크기를 內形의 크기인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

다. 景品提供 割引販賣等에 있어 供給數量이나 期間에 對한 具體的인 制限이나 條件等을 事전에 表示함이 없이 一方的으로 景品數量이나 供給期間을 制限하는 行爲

〈例 示〉

-어떤 冷藏車의 室內容積은 “〇〇l”인데도 不拘하고 當該 冷藏車의 容量表示를 함에 있어서 外形積인 “××l”을 基準으로 하여 “××l型 新모델製品開發”이라고만 表示하여 마치 內容積 ××l型을 새롭게 開發한 것과 같이 宣傳하는 경우

- 包裝에는 “100個入”이라고 表示해 놓았는데 實內容物은 90餘個 程度만 들어있는 경우
- 景品提供時 “先着順 100名에 限함” 또는 “○月 ○日부터 ○月 ○日까지” 等 數量制限에 관한 具體的 制限表示를 하지 않고 現場에 가보면 商品이 없다고 拒絶하는 경우
- K·S 規格 또는 外國公認規格 等に 該當하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K·S” 規格 또는 “外國機關等에 依한 公認된 規格”이라는 內容의 表示를 하는 경우

6. 製造日字, 有效期間等에 관한 表示·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의 製造日字, 包裝日字, 有效期間等을 表示함에 있어서는 事實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事實과 다르게 또는 模糊하게 하여 消費者를 誤導케 할 憂慮가 있는 表示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例 示〉

- “製造日字로부터 ○○日間 有效”라고만 하고 製造日字는 表示하지 않든가 또는 製造日字나 有效期間이 表示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記載方法, 位置 등으로 보아 消費者의 識別이 困難하게 表示되어 있는 경우
- 一定期間이 경과되면 消耗 또는 磨損되는 것을 永久히 또는 事實보다 상당히 長期間 存續하는 것같이 表示하는 경우

7. 特徵에 관한 表示·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의 特徵을 表示함에 있어서는 事實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事實과 다르게 또는 誇張하여 表示하거나 模糊하게 하여 消費者를 誤導케 할 憂慮가 있는 表示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例 示〉

- 自然¹⁾, 純粹²⁾等의 一定한 特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實證되지 않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 自然水” 또는 “純粹알카리” 等으로 表示하는 경우
- “半自動”을 가지고 “自動” 또는 “全自動”이라고 表示하는 경우
- 人工營養素 또는 其他 添加物을 相當量 넣어서 製造한 食品을 “天然食品”이라고 表示하

는 경우

[參 考]

(自 然) : 날것으로서 混合物·添可物이 없고 冷蔵·冷凍 또는 乾燥以外的 어떠한 保存을 위한 加工도 하지 않은 狀態

(純 粹) : 添加物이든 營養素이든 어떠한 것 도 添加하지 않고 汚物, 化學肥料, 殘留農藥 等 을 實質的으로 含有하고 있지 않으며 調理, 冷蔵·冷凍 또는 乾燥以外的 어떠한 保存을 위한 加工도 하지 않은 狀態

8. 原產地, 製造者에 관한 表示·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의 原產地 및 製造者에 관하여 表示를 함에 있어서는 事實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事實과 다르게 또는 模糊하게 消費者를 誤導케 할 憂慮가 있는 表示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가. 國內에서 製造되었음에도 不拘하고(輸出 不合格品 또는 輸出返品 包含) 外國語로만 表示되어 그 表示된 內容으로 보아서는 原產地를 識別하기가 困難하게 表示하는 行爲

나. 外國에서 輸入된 것이라 하더라도 原產地를 事實과 다르게 表示하든가 또는 當該 商品의 原產地 以外的 國家의 文字로만 表示하고 原產地製造者를 表示하지 않든가 또는 表示했다 하더라도 消費者의 識別이 困難하게 表示하는 行爲

다. 外國과의 技術提携製品을 生産·國內販賣하는 경우에 外國商號나 外國製造會社의 名稱만 表示하고 國內에서 生産된 製品이라는 內容은 表示하지 않는 行爲 또는 表示되어 있더라도 消費者의 識別이 困難하게 表示하는 行爲

라. 一部材料나 成分만 輸入되고 實際는 國內에서 製造, 組立 또는 加工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外國에서 生産 또는 輸入된 것처럼 表示하고 製造業者를 表示하지 않는 行爲

마. 自己가 製造하는 商品에 他事業者의 商標나 商號를 表示하여 他事業者가 製造한 것처럼 表示하거나 또는 消費者가 識別하기 困難할 程度로 他事業者의 商標와 類似한 商標를 表示함으로써 一般消費者로 하여금 製造者의 混同

을 招來케 할 憂慮가 있는 表示行爲

9. 保證에 관한 表示·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에 關하여 保證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保證의 內容, 保證의 方法, 保證期間, 保證責任者 等에 關하여 事實대로 表示하여야 한다.

따라서 保證한다고 해놓고 이를 不履行하거나 또는 模糊하게 하여 消費者를 誤導케 할 憂慮가 있는 表示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例 示>

-保證의 內容, 保證의 方法, 保證期間, 保證責任者에 關하여 一切 表示함이 없이 “100% 品質保證” 또는 “무조건 保證”이라고만 表示하는 경우

10. 容器, 包裝에 관한 表示·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에 關한 容器나 包裝은 適正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의 內容에 關하여 消費者를 誤導시키기 위하여 實內容物에 比하여 현저히 過大 또는 高價로 包裝해 놓고 消費者에게 提示하는 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例 示>

-카라멜 販賣時 實內容物이 극히 작은데도 不拘하고 外形包裝은 內容物에 比較하여 현저히 크게(實內容物 크기의 2倍以上)해서 販賣하는 경우

-既히 包裝이 되어 開封을 하지 않고는 識別을 할 수 없는 선물용 케이크를 팔면서 케이크 통밀을 볼록하게 하여 實容量이 케이크통의 外形에 比하여 현저히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경우

11. 推薦, 勸獎等에 관한 表示·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에 對한 推薦, 勸獎等의 事實을 表示함에 있어서는 事實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事實과 다르게 또는 誇張하여 表示하거나 模糊하게 하여 消費者를 誤導케 할 憂慮가 있는 表示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가. 研究機關이나 有名團體, 專門家 等에 의한 推薦, 勸獎, 受賞等의 事實이 없음에도 不拘

하고 있다고 虛僞로 表示하는 行爲

나. 當該 商品을 實際로 購入·使用해본 事實이 없는 消費者의 推薦을 表示하는 行爲

다. 當該 商品에 關하여 實際 試驗, 調查, 檢査를 해 본 事實이 없는 當該部門 專門家의 推薦을 表示하는 行爲

라. 參加賞 또는 巡番賞을 品質이 優秀함으로 因해 受賞한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

마. 部分的인 品質 또는 規格과 關한 賞을 全品質 또는 全規格의 賞을 受賞한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

바. 受賞者가 現存하지 않거나 또는 當該 受賞者가 生産, 組立, 加工, 製作 等에 參與하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參與한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

12. 用途, 使用方法, 注意事項等에 관한 表示·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에 對한 用途, 使用方法, 注意事項等에 關하여 表示함에 있어서는 事實대로 表示하여야 한다. 特히 安全과 關聯되는 商品의 경우에는 識別이 容易하고 使用上의 誤認이 없도록 分明하게 表示하여야 하고 同表示는 當該 商品의 保存其間동안 存續되는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事實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滅失되기 쉬운 形態로 表示하는 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例 示>

-使用上의 注意事項, 用途等이 記載된 Label 이 消費者가 善意의 注意를 기울임에도 不拘하고 容器等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도록 附着하는 경우

-爆發物, 其他 危險 또는 危害한 商品의 容器나 包裝紙等에 同內容物이 暴發, 危險 또는 危害한 것이라는 內容을 表示하지 않는 경우

13. 競爭關係製品에 관한 比較表示·廣告

가. 虛僞의 表示·廣告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者가 供給하는 商品의 價格, 品質, 規格, 原產地, 其他의 去來內容 및 去來條件(以下 “競爭社의 것”이라 한다)에 關하여 表示함에 있어서는 事實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競爭社의 것에 關하여 事實과 다르게

表示하는 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나. 排他性을 띤 絶對的 表現의 表示·廣告

競爭關係에 있는 다른 事業者가 供給하는 商品에 比하여 自己의 것이 현저히 優良 또는 有利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最大” “最高” “最初” “第一” “唯一” 等 排他性을 띤 絶對的 表現의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消費者를 誤導케 할 憂慮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使用하지 못한다.

다만, 客觀性이 있고 本人이 明白히 立證하는 경우에 限하여 이를 使用할 수 있다.

다. 競爭社와의 比較優良 表示·廣告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에 關하여 競爭社의 것 과 比較表示함에 있어서는 事實대로 適正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競爭社의 것에 關하여 虛僞의 內容을 引用하여 比較表示하든가 또는 事實과 같다 하더라도 同一條件下에서 比較하지 않고 自己에게 有利한 部分만을 拔萃하여 比較表示하는 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라. 中傷·誹謗하는 內容의 表示·廣告

競爭社가 供給하는 商品에 關하여 中傷·誹謗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이 현저히 優良 또는 有利하다고 誤導케 하기 위하여 競爭社의 것에 關하여 中傷·誹謗하는 表示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 이 경우 “××會社” 等 競爭關係에 있는 會社를 具體的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一般的으

로 어느 會社를 指稱하는가가 明白한 경우에는 該當이 된다.

<例 示>

— “××會社(自己와 競爭關係會社)의 ○○製品은 藥効가 전혀 없고 治療가 안된다”고 表示하는 경우

— “××會社(自己와 競爭關係會社)의 ○○製品을 먹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진다”고 表示하는 경우

— 最初를 立證할 수 없음에도 不拘하고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表示하는 경우

○ 國內最初로 開發한 ○○製品

○ 國內最初로 輸出한 ××會社

14. 其他의 去來內容 및 去來條件에 關한 事項의 表示·廣告

景品提供, 返品, 交換, 代金支拂方法, 金融利用等 其他 去來內容 및 去來條件等에 關하여 表示함에 있어서는 事實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事實과 다르게 또는 誇張하여 表示하거나 模糊하게 하여 一般消費者를 誤導케 할 憂慮가 있는 表示行爲는 不當表示가 된다.

<例 示>

— 아파트 또는 商街 등의 分讓廣告時 “都心으로부터 10分 距離”라고만 表示하고 그것이 「出退勤時間(rush hour)」 基準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時間」 基準인지를 밝히지 않음은 勿論 또한 「버스」 基準인지 「택시」 基準等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第97號

食 品 工 業

1970年 10月 28日 登錄 마-第355號

1988年 12月 31日 發行(12月號)

發行兼 編輯人 洪 性 徹

印刷人 金 炳 九

發行處· 韓國食品工業協會

서울特別市 瑞草區 方背洞 1002-6

(韓國食品工業協會 會館)

TEL : 585-5052~3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실천강령을 준수한다.